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 목 **시민미술아카데미 강사료 등 지급(보완)**

시민미술아카데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전에 집행하던 강사료 등 적용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.

### 1. 부문별 개선내용

구 분	종 전	개 선
시민미술아카데미	강사료를 2시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3만원 지급	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(2008.6.13)을 근거로 강사 레벨에 따라 강사료(2시간 기준 13만원~22만원) 차등 적용(지급기준-별첨)
	교육운영(실기교육 등)상 필요한 보조강사 강사료 미지급	교육운영(실기교육 등)상 필요한 보조강사의 강사료는 기본1시간 40,000원, 초과시간당 20,000원 지급
	교재 원고료 미지급	서울시 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

※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매년 방문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는 특강개념으로, 운영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 2. 적용시기 : 2011. 7. 1

- 붙임 : 1.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 
2. 서울시 인재개발원 원고료 지급기준 1부. 끝.

주무관 **양혜숙** ★교육홍보과장 **김동원** 학예연구부장 **최승훈** 시립미술관장 **06/30 유희영**  
 협조자 주무관 **윤현구** 주무관 **오현미**

시행 교육홍보과-101749 ( 2011.6.30 ) 접수 ( )  
 100-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61 (서소문 37번지) / http://seoulmoa.seoul.go.kr  
 전화 /전송 02)2124-8950 / / 대시민공개